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박종갑의원외 6인

2. 발의 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04년 12월 14일

○ 회부일자 : 2004년 12월 15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관련법령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부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 조항으로 분리 신설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4. 주요골자

○ 현행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 조항으로 분리 신설(제10조)

○ 별표 증인에 대한 안내문과 공무원 및 증인의 선서서에 조사부분을 추가(별표 1 ~ 2)

## 5. 검토의견

- 제5조제1항제6호의 관련법 조항 개정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동법 제79조의 2를 제77조의 3으로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 제6조제2항은 4대 의회구성 당시, 91년 동 조례를 제정  
하면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시하였지만, 현재는 본 조문의 적용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현행 동조례의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명시된 과태료 부분을 부과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하고,
- 별표의 증인에 대한 안내문에 과태료와 관련된 사항은  
삭제하고, 공무원 및 증인의 선서서에 조례명과 같이  
조사를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정 1991. 4. 12 조례 제1909호

개정 1994. 10. 14 조례 제2158호

1997. 11. 28 조례 제2353호

2000. 4. 8 조례 제2581호

2000. 9. 22 조례 제2607호

2003. 8. 29 조례 제2766호(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의회는 도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 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

(개정 94. 10. 14, 97. 11. 28, 2000. 4. 8, 2000. 9. 22)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 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청북도 (개정 97. 11. 28)
2. 법 제104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 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 사업소(개정 2003. 8. 29)
3.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하되,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97. 11. 28)

4. 충청북도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94. 10. 14)

5.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충청북도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충청북도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94. 10. 14)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위임사무중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94. 10. 14)

②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 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자의 출석증언 및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 11. 28)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 11. 28)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 또는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제3항~제6항 94. 10. 14)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7. 11. 28)

⑤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 1 선서서와 같이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제10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국가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 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무에 대하여 의회가 실시하는 감사는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 한다. (개정 97. 11. 28)

②법 제3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 11. 28)

**제12조(대리출석 답변의 통지)** 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 11. 28)

**제13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4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를 제척할 수 있다. (개정 97. 11. 28)

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 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도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도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충청북도의

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97. 11. 28)  
**제20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와 충  
청북도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0. 14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 28 조례 제2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4. 8 조례 제2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9. 22 조례 제2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29 조례 제2766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이하생략

**과태료부과 기준(제9조제4항관련)**

(개정 97. 11. 28)

(단위 : 만원)

부 과 대 상	금 액	비 고
당해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3회 이상	500	
당해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2회	200	
당해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거부 1회	100	
당해감사 또는 조사시 증언거부	50	